

임원회비 운영규정

제정 2025.02.1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“경상북도체육회”(이하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회비(이하“회비”라 한다)의 납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비의 구분)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납부하며,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회장 회비
2. 부회장 회비
3. 이사 회비

제3조(적용의 범위) 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 회비 : 도체육회 정관 제23조, 제24조, 제27조에 의거 선출된 회장
2. 부회장 회비 : 도체육회 정관 제23조, 제27조에 의거 선임된 임원
3. 이사 회비 : 도체육회 정관 제23조, 제27조에 의거 선임된 임원

제4조(회비납부의 의무) 회장, 부회장, 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일내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연직(사무처장, 경상북도교육청과장, 경북체육중고등학교장, 시군사무국장협의회장, 종목단체전무이사협의회장)임원 및 감사는 회비를 면제한다.

제5조(회비의 납부방법) ① 회비의 납부는 체육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회비는 매년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
제6조(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) 회장, 부회장, 이사가 당해연도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.

제7조(회비의 관리) ① 회비는 사무처 기타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체육회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또는 자체운영비로 전입할 수 있다.

제8조(회비의 사용) 회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체육회 정관 제4조의 사업
2. 직원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
3. 경상북도 체육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4.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

부 칙 (2025. 02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